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의명 : 제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24. 2. 21.(수) 10:02

-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2인)

- 불참위원 : 없음

제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2분 개회 】

1. 성원보고

- 김홍일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표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두 분 중 두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박동표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김홍일 위원장
 - 2024년도 제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김홍일 위원장
 - 2024년도 제6차, 제7차, 제8차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김홍일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주)전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24-09-018)

○ 김홍일 위원장

- <의결안건 가> “(주)전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주)전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주식회사 전주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일진다이아몬드(주)가 2024년 1월 18일 신청한 (주)전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별지] 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지] 심사 기본계획입니다. (주)전주방송 최다액출자자가 일진홀딩스(주)에서 일진다이아몬드(주)로 변동되는 사항으로 동일 기업 집단 내에서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주식 계약을 '23년 12월 21일에 체결하였고, '24년 1월 18일 변경 승인이 신청되었습니다. 심사 기본방향입니다.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시청자, 경제·경영·회계, 법률 등 전문가 6인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관련분야 5년 이상, 자격증 소지자 등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인사로 위촉하고 신청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식 소유자, 자문 등의 경력이 있는 자 등은 결격사유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운영(안)입니다. 기본방향으로 변경 승인 기본계획을 토대로 신청서류 검토결과,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심사의견으로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적으로 심사위원회는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 신청법인과 방송사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심사 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자 의견청취는 심사기간 내 실시 예정입니다. 최종 심사 방안은 심사위원 간 토론을 거쳐 심사위원별 총평 및 심사 사항별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심사위원별 심사의견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심사 항목입니다.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변경 승인 여부 결정 관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심사의견 등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변경 승인 여부 및 승인 조건 등을 의결합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기본계획이 의결되면 3월 초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사무처에서는 보고한 대로 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기본계획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저도 간단히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 승인 건은 민영방송인 (주)전주방송의 최다액 출자자를 일진홀딩스(주)에서 일진다이아몬드(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일진다이아몬드(주) 일진홀딩스(주)의 자회사로서 결국 이번 안건은 (주)전주방송을 일진홀딩스(주)의 자회사에서 손자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방송의 공공성 보장과 재정적·안정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그런 데 대한 논의가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이번 최다액출자자 변경의 목적이 신청인이 (주)전주방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도 제출 받아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에서는 기본계획 의결 이후 관련 절차를 준수 하여 면밀하고 엄격한 변경 승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 김홍일 위원장

- <보고안건 가>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3조 단서규정에 부당한 차별이 아닌 지원금 기준 기준을 신설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보고 이후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의결을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말기유통법은 당초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되었지만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단말기 가격인상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말 생활규제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지원금 경쟁 축진을 통한 단말기 구입 비용 경감을 위한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단말기유통 폐지에는 또 국회의 의결과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시행령 제3조에 대한 예외기준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보고 이후 사무처에서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 시행령 개정 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처 보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여 보조금 경쟁을 완전 자율화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단통법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에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통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사업자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업자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사무처에서는 관련 기관과 업무협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고시 제정 등의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접수되었습니다.

8. 기 타

○ 김홍일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그러면,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김홍일 위원장

- 이상으로 2024년도 제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14분 폐회 】